

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2026년도 하반기 대가·약취 자가측정 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6.



여수시도시관리공단
YEOSU URBAN MANAGEMENT CORPORATION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2026년도 하반기 대기·악취 자가측정 위탁 용역

2.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대기·악취 분야 오염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분석을 통하여 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Data로 활용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환경오염시설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함.

3. 용역범위

1) 측정항목 :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 대기분야

- #A1 소각로(31항목): 황화수소(H_2S), 암모니아(NH_3), 이황화탄소(CS_2), 시안화수소(HCN), 포름알데히드($HCOH$), 불소화합물(HF), 카드뮴화합물(Cd), 납화합물(Pb), 크롬화합물(Cr), 구리화합물(Cu), 니켈화합물(Ni), 브롬화합물(Br), 벤젠(C_6H_6), 페놀화합물(C_6H_5OH), 수은화합물(Hg), 비소화합물(As), 아연화합물(Zn),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스티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메틸, 베릴륨, 벤조(a)피렌

○ 악취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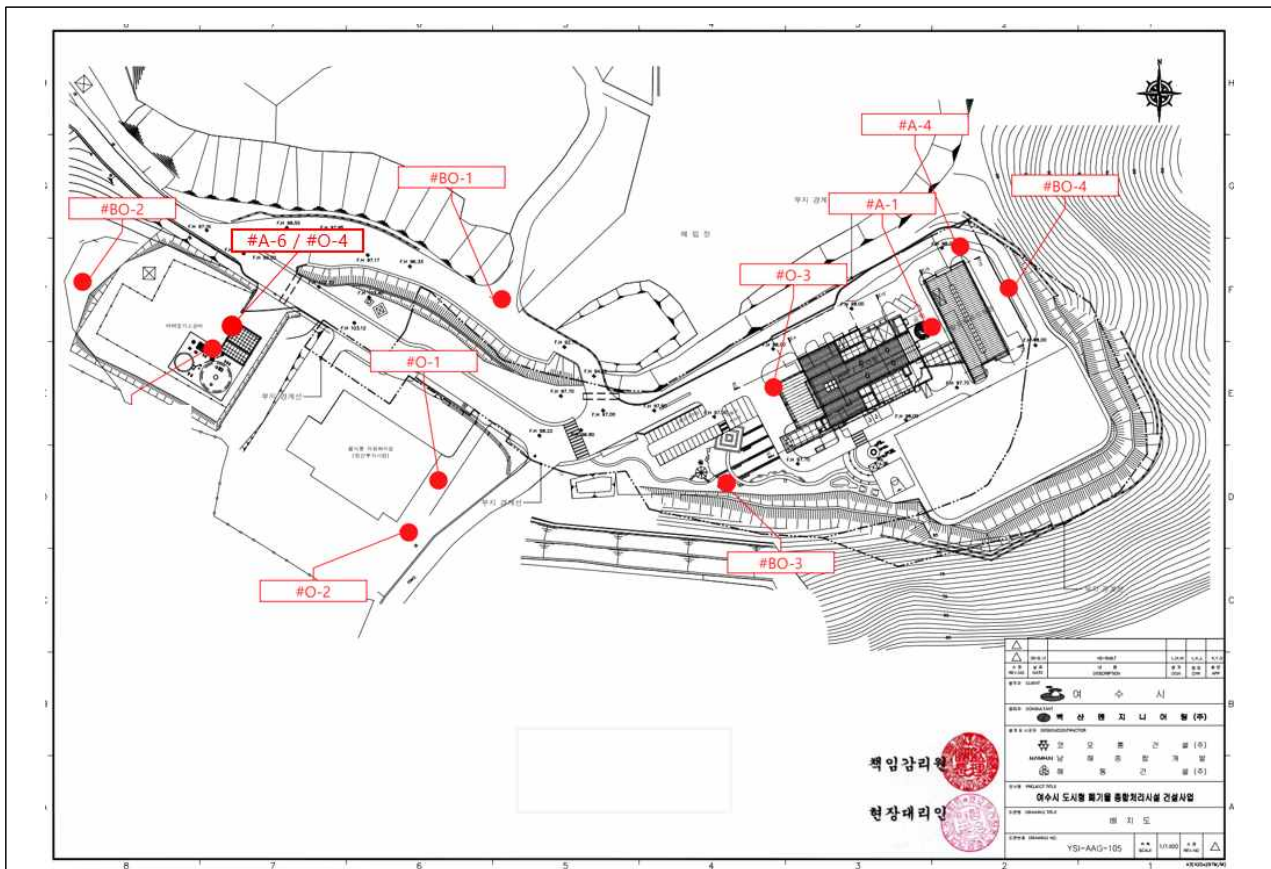
- 복합악취 11지점(배출구 및 부지경계)
- 지정악취 22종 4지점(부지경계) :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l-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l-발레르산, l-뷰틸알코올

2) 측정방법 : 대기오염공정시험법·악취공정시험기준에 의거 시료 채취 및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항목의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측정지점

- 대기 : 소각로 굴뚝 지상 12m지점
- 악취 : 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경계, 배출구

※ 악취 측정지점 위치도



측정지점	측정 지점명	비고
#BO-1	부지 북쪽	복합, 지정
#BO-2	부지 서쪽	복합, 지정
#O-1	음식물처리시설(스크러버)	복합
#O-2	음식물처리시설(스크러버)	복합
#BO-3	부지 남쪽	복합, 지정
#BO-4	부지 동쪽	복합, 지정
#A-1	소각시설(굴뚝)	복합
#A-4	스티로폼감용시설(굴뚝)	복합
#O-3	약액세정탑(폐수)	복합
#A-6	RTO(스크러버)	복합
#O-4	RTO(스크러버)	복합

4) 측정횟수

○ 대기 : 주기는 항목별 아래와 같으나 횟수는 소각장 가동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지 기간에는 미 실시.

- #A1 소각로(31항목) : 2회(분기 1회)

○ 악취

- 복합악취 11지점(부지경계, 배출구) : 1회

- 지정악취 22종 4지점(부지경계) : 1회

※ 계약체결 후 법규 개정, 통합환경허가 등에 따른 측정주기 변경 시에는 변경주기에 따른다.

※ 측정주기 외 발주자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측정에 응해야 한다. 이때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5) 측정시기 : 주간(시설물 정상가동 시)

6) 보고서제출 :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 분석 및 성적서 제출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5. 용역연장 :

용역기간 종료 시 바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 계약자 선정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3조 1항의 측정항목은 변경 될 수 있다.

6. 과업의 진행

1)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시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측정 분석결과는 지정된 기일 내 보고하되, 배출허용기준 초과 또는 측정값의 이상 변화를 확인하는 즉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에 우선적으로 유선 통보하고, 이때 발생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공한다.

3) 국가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관련기관 등의 보완 및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4) 본 용역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즉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5) 본 용역을 수행하는 현장 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성실 또는 부적절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담당자와 협의 처리하되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7. 보안사항

- 1)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수행의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는 보안 관리에 만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기밀 누설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2) 용역 수행자는 과업성과를 소각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3) 보안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8. 안전관리

- 1) 본 용역과업의 수행에 종사하는 계약자의 인원과 관련한 안전관리와 재해의 처리, 안전사고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보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2)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안전관리 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한다.(착수계 제출시)

9. 측정결과 제출

- 1) 측정결과는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분석을 완료하여 제출한다.

2) 측정결과 보고서는 계약자의 양식으로 하되 반드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분석 의뢰인
- ② 분석의뢰 내용
- ③ 시료채취 일시, 장소 및 방법
- ④ 항목별 분석결과(대기 관련법의 배출허용기준 및 분석방법 포함)
- ⑤ 분석 기간 및 종료일
- ⑥ 시료채취 및 분석 책임자
- ⑦ 그 외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10. 제반사항 및 비용의 청구 지급

- 1) 본 용역의 비용은 매월 단위로 지급한다.
- 2) 용역비용 청구는 발주자의 지정일자 이내에 문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해당 월의 비용은 익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본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기간 중에는 유류비, 물가변동, 인건비, 장비의 증감 등의 사유 등 낙찰자의 사유로 인한 단가조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4) 계약상대자의 원인과 책임으로 인하여 본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대한 그 어떠한 비용도 낙찰자는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1. 계약의 해지

- 1) 본 과업지시서의 계약해지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
- 2) 본 과업수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관련 법규위반 등 발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 3) 과업수행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 양도 또는 사업자 간에 이면공동수행등 본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과업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발주자의 시설운영/관리에 있어서 지장을 주거나 또는 피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5) 용역수행 중 부도, 파산 또는 위법에 따른 행정조치, 과태료 등을 받거나, 발주자의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
- 6) 과업지시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 7) 본 용역을 수행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
- 8) 상기, 2)~7)항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와의 계약해지 외에도 발주자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 1) 계약상대자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여 당 소각장에 피해를 입힐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이에 따른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2)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3)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4)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험 분석한다.
- 5)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측정 지연으로 인하여 소각장 운영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토록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